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핵심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8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핵심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2
※ 참고자료	12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련 조문 일부	1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1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핵심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추락, 끼임, 차량계 기계 등 충돌, 폭발·화재, 질식과 같은 주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시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울 등 방호장치의 설

<신 설>

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 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8조¹⁾ 및 제39조²⁾는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및 설비, 폭발

- 1)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성·발화성 물질, 불량한 작업방법,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가스·산소결핍 및 환기 불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러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³⁾하도록 하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

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제재가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등 불이익이 미미하여⁴⁾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재해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찢림	화재·폭발·파열	교통 사고	무리한 동작	기타
2026.1분기	사고 재해자	27,290	2,818	7,216	552	2,458	1,573	88	2,841	2,575	194	2,929	1,980	2,066
	사고 사망자	212	57	10	13	32	11	10	21	0	10	35	0	13
전년 동기	사고 재해자	26,607	3,098	7,550	658	2,334	1,550	92	2,855	2,365	164	2,389	1,749	1,803
	사고 사망자	219	73	12	11	14	16	12	21	0	8	32	0	20

※ 기타는 감전, 이상온도접촉, 빠짐·익사, 화학물질누출, 산소결핍, 체육행사 등임

자료: 2026.1분기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이에 개정안은 추락·끼임·충돌·폭발·화재·질식과 같이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중심 판결(51건, 86.4%), 산업재해 발생 전에 점검·감독 중 적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99.6%가 벌금형(평균 130만원) [노동안전 종합대책_2025.9.15. 관계부처 합동]

위반할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기존의 형사처벌에 더하여 금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법을 위반하려는 유인을 낮춤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임.

한편, 개정안 제39조의2에 신설하려는 안전·보건조치는 현행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현행법의 위임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조치 중 일부를 핵심 안전·보건조치로 선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개정안 관련 현행법령 유사 내용

구분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추락) 추락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 제공 등	(제32조, 제6장제1절 등) 추락위험 작업에 안전모·안전대 지급,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끼임)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덮개·울 등 방호장치 설치 등	(제87조, 제88조, 제192조 등) 원동기, 회전축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 설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 설치, 컨베이어 등에 운전정지 장치 설치 등
(충돌)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 방지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제172조, 제179조, 제200조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시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지게차 등과 충돌 방지 위해 후진경보기 등 설치

5)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조문 p.12

(폭발·화재)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제232조, 제241조의2, 제243조 등)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등 환기장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설치, 건축물 등에 소화설비 설치
(질식)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착용 등	(제3편 제10장)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적정공기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공기호흡기 등 지급, 작업시작 전 환기 등

첫째, 개정안의 안전·보건조치가 현행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함에 따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현행 법상 형사처벌과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⁶⁾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바,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그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달라 원칙적으로는 병과가 가능하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잉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⁷⁾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추락·끼임·충돌 등은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재해가 발생하는

6)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임. 이는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과는 달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나 행정벌로 제재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 규정함.[법제기준과 실제 p.444]

7) 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등 본안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대상자에게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이 문제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중복적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부동산실명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둔 이외에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과잉제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안전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에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험 외에도 붕괴·물체의 낙하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위험에 의한 재해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안전·보건 조치의 위반에 대해서만 기존 형사처벌에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산업재해 예방사업 등에 사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⁸⁾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제160조⁹⁾ 및 제161조¹⁰⁾에서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

8)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 8.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9)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

는 과징금과 도급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상한은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부과 시 도급 금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한도 30억원으로 현행법의 다른 과징금에 비해 부과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그 부과요건과 상한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8조·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6964호)¹¹⁾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

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 11)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병과를 통해 핵심 안전·보건조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추락 관련]

제1편 총칙

제4장 보호구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제49조)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끼임 관련]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제86조~제224조)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폴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착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물론 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인발(引拔)·압축·꼬임·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기계 등 충돌 관련]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제171조~제190조)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6조~제221조의5)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폭발, 화재]

제2편 안전기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25조~제300조)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식]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18조~제645조)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